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치료에 대한 영양급여기준 적용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- 3440 (2015.6.12)

2. 위 근거를 통하여,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의 급성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는 「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의 인정기준(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4-15호)」에 해당되어 영양급여로 인정됨과 메르스 환자 치료에 EC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요청한 바, 이를 안내합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254 (2015.06.23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